

2026. 1. 15.(목)
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



제28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

【 심의안건 】

- 1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※ 별도자료(책자)
- 2 부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
(의회운영위원회)

※ 별도자료(책자) 참고

< 목차 >

□ 의정목표	3
□ 일반현황	5
□ 예산현황	10
□ 2026년 주요 업무계획	

【의회운영과】

○ 2026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	15
○ 전문성 강화와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확립	16
○ 시민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홍보	17
○ 제9대 의회 성과 정리 및 제10대 의회 출범 준비	18

【입법정책과】

○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분석 지원	21
○ 입법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청렴 의회 구현	22

【전문위원회】

○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임위원회 운영	25
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2

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6. 1.

제 안 자 :

1. 제안이유

- 의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한 의회 및 부천시 공무원을 폭넓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도모하고 포상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공무원 표창 대상을 의회 및 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함(안 제5조제5호)
-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함(안 제5조제6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그 밖의 사항: 해당없음

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부천시의회”를 “의회 및 부천시”로, “의정발전”을 “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효창장 · 패) 효창장(패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부천시의회</u>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<u>의정발전</u>에 기여한 경우<호 신설 2022.4.13.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효창장 · 패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의회 및 부천시</u> ----- ----- <u>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</u>-- -----</p> <p>6. <u>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

참고 1

현행 조례

부천시의회 포상 조례

(일부개정) 2024.12.23 조례 제4163호

제5조(표창장·패) 표창장(패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 <개정

2013.05.06>

1.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
2.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
3.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
4.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
5. 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<호 신

설 2022.4.13.>

참고 2

타 의회 현행 조례

광명시의회 포상조례

(일부개정) 2022.12.26 조례 제2928호

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
1.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
2.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
3.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
4.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군포시의회 포상조례

(일부개정) 2025.07.11 조례 제2282호

제5조(포상의 요건)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.

<개정 2025.1.7.>

1. 표창장(패)

- 가.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
- 나. 공무원 및 유관기관·단체 임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
- 다.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
- 라. 그 밖에 봉사 등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
- 마.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시흥시의회 포상조례

(일부개정) 2021.12.28 조례 제2094호

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
- 1.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- 2. 의회 및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
- 3. 지역사회 발전과 미풍양속의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
- 4.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
- 5.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안산시의회 포상조례

(제정) 2020.11.18 조례 제2426호

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
1. 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
2.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
3.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
4.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한 공적으로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
5.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안양시의회 포상조례

(일부개정) 2024.11.05 조례 제3680호

제6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.

1. 의정 발전,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2. 의회 및 안양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3. 졸업예정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
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